

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평생학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재지)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대학본부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.

제3조(평생고등교육 진흥 지원)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고등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송통신대학교 중·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고등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.

② 평생고등교육발전위원회는 평생고등교육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방송통신대학교 내외 전문가로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평생고등교육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평생고등교육 진흥을 위한 대학의 중·장기 발전계획
2. 평생고등교육 진흥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
3. 평생고등교육 진흥에 필요한 대학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

4. 그 밖에 평생고등교육 진흥 및 대학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평생고등교육발전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고등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
⑥ 총장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
1. 방송통신대학교를 활용한 평생고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의 목표 및 효과
2. 평생고등교육 진흥을 위한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
3. 진흥사업에 드는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

제4조(교직원 등의 임명) ① 법 제7조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교수·부교수·조교수 및 겸임교원 등을 교원으로 두고,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조교를 두며, 필요한 경우 학과 또는 학부 등에는 학습지원을 위한 인력 등을 둘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원과 조교의 자격은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르며,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직원으로는 국가공무원과 「국립대학회계법」 제29

조에 따른 대학회계직원을 두되, 직원의 임명에 관하여 국가공무원
은 「국가공무원법」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
르며, 대학회계직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

제5조(교원 등) ① 법 제7조에 따른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 등에 소속
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학과 또는 학부 등에 전공별로 교원 1명
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총수는 학
생수를 4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(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)만큼 확
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학생수는 다음 각 호의 인원을 합한 수에 따라 산
정한다.

1. 대학의 학생정원 중 등록학생
2. 대학원 학생정원의 1.5배
3.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있는 정원중
등록학생
4. 시간제등록 인원을 3으로 나눈 수

③ 방송통신대학교에는 겸임교원, 명예교수, 강사 등을 둘 수 있다.
방송통신대학교에 두는 겸임교원의 경우 학기당 6학점 이상을 담당
하는 겸임교원은 제1항에 따른 교원 수에 포함하되, 전체 교원의 5
분의 1을 넘지 못한다.

④ 법 제7조에 따른 조교는 교육·연구의 지원 및 보조, 학사사무의
보조를 위해 학과·학부 등에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, 조교의 총

수는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학과·학부 학생정원을 기준으로
별표3과 같다. 다만, 대학원 과정이 설치된 학과·학부는 각 1명을
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.

제6조(직원 정원) ① 영 제4조 제3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「국
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」을 따른다.

② 영 제4조 제3항에 따른 대학회계직원 정원은 「국립대학회계법
시행규칙」 제23조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총장이 정한
다.

제7조(교사 및 교지 등) ①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
다. 다만, 별표1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중 지역대학의 경우에는 설립
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
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사는 별표1의 구분에 따르며, 교육기본시설과 지
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은 별표1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
적에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
한 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. 이 경우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
건축물 등의 면적을 포함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교지는 대학의 교육·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
용 대지 (대학의 소재지 외 국내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는 교육기본
시설 건축물의 부지를 포함한다)를 말하며, 확보해야 할 교지 면적
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

면적으로 한다.

④ 방송통신대학교에는 각종 서버, 통신장비, 콘텐츠 개발 설비 등 원격교육 및 학사관리에 필요한 설비가 있어야 한다.

제8조(학교규칙) ① 법 제8조 따른 학교규칙(이하 "학칙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방송통신대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
2. 단과대학·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프라임칼리지·대학원 및 학과·학부의 설치
3. 하부조직(부속시설 등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한다)과 그 분장사무
4. 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② 법 제8조 2항에 따른 학칙의 기재사항,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에 따른다.

제9조(지역대학) ① 법 제11조에 따라 수업 및 시험 업무, 학적관리, 입학 업무 지원, 지역사회 평생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대학을 둔다.

② 지역대학에 학장을 두되, 학장은 총장이 임면(任免)한다.

③ 학습 및 학생활동 지원 등을 위해 지역대학 산하에 하부조직을 두며, 지역대학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디지털미디어센터) ① 법 제11조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 교육

콘텐츠 개발, 제작, 송출 및 그 밖의 방송·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운영을 위한 디지털미디어센터를 둔다.

② 디지털미디어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인권센터) ① 법 제11조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
제12조(원격교육연구소) ① 법 제11조에 따라 국가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고 원격·평생·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격·평생교육 분야의 학술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에 원격교육연구소를 둔다.

② 원격교육연구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
제13조(부속시설 등의 세부사항) 영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기타 부속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(하부조직)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사무국을 두고,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임명하며,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.

② 방송통신대학교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·실·본부·단

등의 하부조직을 두고, 그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.

③ 법 제11조의 부속시설 등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국과 처·실·본부·단 등의 하부조직에 13개의 범위에서 과를 둔다. 이 경우 과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④ 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무대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으로 임명한다.

⑤ 법 제10조에 따른 단과대학 등에 2개의 범위에서 행정실을 두되, 실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. 다만, 2개 이상의 단과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5조(월정직책급 등) 법 제6조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·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

교사시설의 구분

교 사 시 설	구 분		
교육기본시설	강의실·실험실습실·교수연구실·행정실·도서관·대학본부·지역대학·콘텐츠 제작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하며, 도서관에는 자료실·서고 및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.		
지 원 시 설	강당, 서버·통신장비 관리실, 시스템 운영실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.		
연 구 시 설	연구용 실험실·대학원 연구실·대학 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.		
부 속 시 설	교수·직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(관사), 종합실습교육장, 산학협력관, 학교 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		
교사시설의 기준면적 (단위: m ²)			
구 분	계 열 별	인문·사회	자연·교육
	학생1인당 교사기준면적	1.5	2.5

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

사무국장의 분장사무(제14조제1항관련)

명 칭	분 장 사 무
사 무 국 장	보안, 관인관리, 직원인사, 급여, 문서관리, 법무, 자체감사,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, 회계 및 결산,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, 각종 공사 및 시설관리,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, 비상기획,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사항

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

학과·학부 학생정원

학생정원 구분	10,000명 미만	10,000명 이상 ~ 15,000명 미만	15,000명 이상 ~ 20,000명 미만	20,000명 이상
조 교 인 원	3	5	7	9